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류 []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제출사항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2.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현황[「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및 3)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등록	→
				등록증 발급	
처리기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